선수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회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에 적용한다.

② 본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선수등록 업무 및 선수등록 규정 심의
4.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5.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과 위촉)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21인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 선수 출신자 등으로 하되 동일대학 출신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2. 육성단체(팀) 지도자를 1/3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국가대표 출신이 재적위원 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을 준수하여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2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지급 등)

본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0. 6.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3. 4.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

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